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
시행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 건설에 관한 절차, 건설사업 시행자의 지정, 지역기업 우대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「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이 제정(법률 제20293호, 2024. 2. 13. 공포, 2024. 8. 14. 시행)됨에 따라,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,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 및 우대 방법,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(안 제2조)

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,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,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형식·소요량 및 확보계획 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

나.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(안 제3조)

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려고 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

다.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(안 제4조)

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,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·물건 또는 권리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·주소, 계획평면도·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등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

라. 지역기업의 우대(안 제5조)

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공사·물품·용역 등의 계약의 범위를 정하고, 우대를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하도록 하며,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사업시행지역의 관할 및 인근 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지역기업 우대 계약의 범위 및 우대 절차 등을 규정

마. 승인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(안 제6조)

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,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, 사업의 개요,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 승인의 취소 등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

바. 과태료의 부과기준(안 제7조)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) 법 제8조제2항제9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
2.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
3.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형식·소요량 및 확보계획
4. 철도교통 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 열차운영계획

제3조(사업시행자 지정)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서
2. 자금조달계획서
3. 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

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(이하 “사업시행자”라 한다)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4조(실시계획의 승인)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
2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·물건 또는 권리(이하 “토지등”이라 한다)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·주소
3. 계획평면도·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
4. 사업시행 기간
5.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)
6.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·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
7.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
8. 문화재 현황 조사 결과
9. 지진피해 경감대책
10.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(이하 “실시계획”이라 한다)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
11.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

- 18조제1항제1호·제2호에 따라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
12.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·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
13.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
14.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
15.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
16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 심의에 필요한 서류
- 제5조(지역기업의 우대) ① 법 제14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·물품·용역 등의 계약”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.
1.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
 - 가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
 - 나. 「전기공사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

- 다. 「정보통신공사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
 - 라. 「소방시설공사사업법」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
2.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, 기계류,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·구매 계약
 3.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용역계약
 - 가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
 - 나. 「건축사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
-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우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.
-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사업시행지역의 관할 및 인근 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.
- ④ 관할 및 인근 광역시장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송부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- 제6조(승인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)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
 2.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법

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)

3. 사업의 개요

4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
5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·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	법 제21조제1항제1호	300
하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및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21조제1항제2호	300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953